(붙임 2 -⑤)

# 대출거래약정서(가계용) 개정(안)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(안) | 비 고 |
|---|---|---|
| **(p.1)**<br>본인은 한국외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합니다.)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및 대출이자·원(리)금 자동대체약관, 관련 예금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의 내용을 확약합니다. | **(p.1)**<br>1. 본인은 한국외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합니다.)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,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(통장대출의 경우)이 적용됨을 승인하고,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. | - 문언정비 |
| **(p.3)**<br>1.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및 가계대출 상품설명서, 본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,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 | 2.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과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,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, 이해하였습니다. | - 문언정비 |
| 2.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, 대출이자율 인상 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 | 3. 변동금리대출은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, 대출이자율 인상 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 | |
| **제1조 거래조건** | **제1조 거래조건** | |
| **1. 거래구분 :** ☐ 한도거래 ☐ 건별거래 | **1. 거래구분 :** ☐ 한도거래 ☐ 개별거래 | - 문언정비 |
| **2. 대출기간** | **2. 대출기간** | |
| • 대출개시일: ☐ 은행 승인일 ☐ 은행 취급일 ☐ 년 월 일 | • 대출개시일: ☐ 대출 실행(한도약정)일 ☐ 년 월 일 | - 문언정비 |
| • 대출만기일: ☐ 은행 승인일로부터 년 ☐ 은행 취급일롭터 년<br>☐ 년 월 일 | • 대출기간만료일: ☐ 대출 실행(한도약정)일로부터 년 개월<br>☐ 년 월 일 | |
| **3. 이자율** | **3. 대출이자율(연이율)** | |
| ☐ **고정금리** | ☐ **고정금리** | |
| **대출기간만료일까지** | **대출기간만료일까지** | |
| ☐ 연 % | ☐ 연 % | |
| ☐ 원화대출고정금리 + ( )% | ☐ ( ) 물 국고채권 유통수익률 + ( )% | - 국고채권 기준 추가 |
| ☐ 기타( ) + ( )% | ☐ 원화대출고정금리 + ( )% | |
| | ☐ 기타( ) + ( )% | |

| | | |
|---|---|---|
| □ **변동금리**<br>□금융채(AAA) 유통수익률 +___%<br>□신규취급액기준 COFIX +___%<br>□잔액기준 COFIX +___%<br>□단기 COFIX +___%<br>□기타(  ) +___% | □ **변동금리**<br>□(  )물 금융채(AAA) 유통수익률 + (___)%<br>□신규취급액기준 COFIX + (___)%<br>□잔액기준 COFIX + (___)%<br>□91일물 CD유통수익률 + (___)%<br>□수신금리 + (___)%<br>□기타(  ) + (___)% | - 문언정비 및<br>기준금리 추가,변경 등 |
| **□혼합금리**<br>1. 고정금리<br>대출일로부터 (  )개월간 원화대출고정금리 + ___%<br>2. 변동금리 적용<br>고정금리 적용기간 이후 별도의 추가약정에 따라 변동금리 적용<br>[단,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<br>(  ) + ____%를 변동금리로 적용] | **□혼합금리**<br>1. 고정금리<br>대출개시로부터 (  )년 (  )개월간<br>□ 고정금리 _____%<br>□ 원화대출고정금리 + (  )%<br>□(  )물 금융채(AAA) 유통수익률 + (___)%<br>□기타(  ) + (___)%<br>2. 변동금리 적용(고정금리 적용기간 만료 이후)<br>□신규취급액기준 COFIX + (___)%<br>□잔액기준 COFIX + (___)%<br>□ u-보금자리론 고정금리(기본형) 10년만기 대출금리 + 가산금리(  )% 또는 차감금리 (  )%<br>□기타(  ) + (___)% | - 문언정비<br>기준금리 추가,변경 등 |
| **4. 이자 및 지연배상금률 계산방법**<br>1. 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.<br>2. 지연배상금률은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(  )%를 적용합니다. | **4. 이자 및 지연배상금률 계산방법**<br>1. 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.<br>3.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에 의해 결정된 약정이자율에 다음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최고 연(  )%를 적용합니다. | - 문언정비 |

| | | |
|---|---|---|
| 3. 연체가산금리<br>▪ 건별거래: 연체기간이 ( )개월 미만인 경우 ( )%, 연체기간이 ( )개월 이상 ( )개월 미만인 경우 ( )%,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( )%를 적용합니다.<br>▪ 한도거래: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( )%의 단일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. | ▪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( ) %<br>▪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( )%<br>▪ 3개월 초과인 경우 ( )% | - 연체기간 적용기준 변경 |
| **5. 중도상환수수료**<br>□대상<br>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(대출잔여일수 ÷ 대출기간)으로 하며, 중도상환수수료율은 ( )%를 적용합니다.<br>□비대상 | **5. 중도상환수수료**<br>□대상<br>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(대출잔여일수 ÷ 대출기간)으로 하며, 중도상환수수료율은 ( )%를 적용합니다.<br>□비대상 | |
| **6. 대출실행방법**<br>□ 대출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.<br>□ 대출개시일로부터 ( )년 ( )월 이내에서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.<br>□ 대출개시일로부터 ( )년 ( )월 이내에서 매( )개월 마다 분할 실행합니다.<br>□ 본인의 청구가 있는대로 실행합니다.(통장회전대출)<br>□ 기타( ) | **6. 대출실행방법**<br>□ 대출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.<br>□ 대출개시일로부터 ( )년 ( )월 이내에서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.<br>□ 대출개시일로부터 ( )년 ( )월 이내에서 매( )개월 마다 분할 실행합니다.<br>□ 본인의 청구가 있는대로 실행합니다.(통장대출)<br>□ 기타( ) | |
| **7. 상환방법**<br>□ **일시상환**<br>□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상환합니다.<br>□ 자유로이 상환하되,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.(통장회전대출)<br>□ **분할상환**<br>• 거치기간: □없음 □ ____년___개월 | **7. 상환방법**<br>□ **일시상환**<br>□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상환합니다.<br>□ 자유로이 상환하되,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.(통장대출)<br>□ **분할상환(감액)**<br>• 거치기간: □없음 □ ( )년 ( )개월 | -문언정비 |

| | | |
|---|---|---|
| | • 상환방법 | |
| □ 거치기간 만료일로부터 매 (  )개월 마다 (□ 원리금, □ 원금)균등분할 상환합니다. | □ 거치기간 만료일로부터 매 (  )개월 마다 (□ 원리금, □ 원금)균등분할 상환(감액)합니다. | - 문언정비 |
| □ 대출금 중 금 (  )원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상환하며, 나머지 대출금액은 거치기간 만료일로부터 매(  )개월 마다 (□ 원리금, □ 원금)균등분할 상환합니다. | □ 대출금액(한도) 중 금 (  )원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상환하며, 나머지 대출금액(한도)는 거치기간 만료일로부터 매(  )개월 마다 (□ 원리금, □ 원금)균등분할 상환(감액)합니다. | - 문언정비 |
| □ 기타 (  ) | □ 기타 (  ) | |
| **(신  설)** | **• 분할상환(감액)일** 매월 (  )일로 하며, 해당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. | -분할상환일 항목 추가 |
| **• 상환 및 이자 지급시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 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** | **• 은행 영업시간 마감 이후 ATM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 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** | - 문언정비 |
| **8. 이자지급방법** | **8. 이자지급방법** | |
| □ 최초이자는 대출일로부터 (  )개월 이내에,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(  )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. | □ 최초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(  )개월 이내에,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(  )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. | |
| □ 분할상환금 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. | □ 분할상환금 원금 상환일(대출한도 분할감액일)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. | |
| □ 매월 (  )일에 지급합니다. | □ 매월 (  )일에 지급합니다. | |
| □ 대출만기일에 지급합니다. | **(삭  제)** | - 만기지급조건 삭제 |
| □ 기타(  ) | □ 기타(  ) | |
| **9. 대출기간 자동연장** | **9. 대출기간 자동연장** | |
|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기간 연장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, 은행은 “대출기간 연장 및 금리변경”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은행이 정하는 단위로 상환기일의 연장 및 금리변경 처리하기로 하며, 은행은 연장된 대출금의 이자율과 새로운 상환기일 등을 연장 후 1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. |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기간 연장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, 은행은 "대출기간 연장 및 금리변경"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상환기일의 연장 및 금리변경 처리하기로 하며, 은행은 연장된 대출금의 이자율과 새로운 상환기일 등을 연장 후 15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 등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. | - 문언정비<br>- 통지기한 변경 |

| | | |
|---|---|---|
| (p.2)<br>**제2조 대출이자율의 변동**<br>① 제1조에서 선택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에 의한 대출이자율은 대출실행일(통장회전대출의 경우 대출승인일, 분할취급대출은 건별로 매 대출실행일) 현재의 「기준금리 + 가산금리」에 의해 결정되며, 변동금리에 의한 대출이자율은 매 금리변동주기가 도래하는 날에 변경하여 적용됩니다.<br>② 제1조에서 선택한 각 '기준금리'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됩니다.<br>1. **원화대출고정금리**는 자본시장에서 유통되는 시장 상품중 금리만기일과 일치하는 대표적 상품의 시장 유통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적용합니다.<br>가. 금리만기별 기준상품 유통수익률 등 : CALL금리, CD유통수익률, 금융채(AAA)유통수익률, 국고채수익률<br>나. 산출방법 : 여신실행일의 직전 영업일 공신력 있는 기관(한국은행, 한국금융투자협회 등)이 고시하는 금리 만기별 기준상품 유통수익률 등을 적용하며, 유통수익률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간법에 의하 여 산출하여 적용합니다.<br>※ 보간법 : 기준상품의 시장유통수익률이 없는 만기구간은 유통수익률이 있는 상하만기 수익률에 가중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법<br>2. **금융채(AAA)유통수익률**은 대출실행일과 매 금리변동 주기가 도래하는 날에 KIS채권평가, 한국자산평가, 나이스피앤아이가 고시하는 직전 영업일(금리변동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전영업일)의 기간별(신탁대출의 경우 1년물) 금융채(AAA) 유통수익률의 단순평균값을 적용합니다.<br>3. **COFIX**는 대출실행일과 매 금리변동주기가 도래하는 날 직전 영업일에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된 단기 COFIX, 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잔액기준 | (p.2)<br>**제2조 대출이자율의 변동**<br>① 제1조에서 선택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에 의한 대출이자율은 대출개시일(분할취급대출은 건별로 매 대출실행일) 현재의 「기준금리 + 가산금리」에 의해 결정되며, 변동금리에 의한 대출이자율은 매 금리변동주기가 도래하는 날에 변경하여 적용됩니다.<br>② 제1조에서 선택한 각 '기준금리'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됩니다.<br>1. **금융채(AAA)유통수익률(3개월물, 6개월물, 1년물, 3년물, 5년물)**은 대출개시일과 매 금리변동 주기(3개월, 6개월, 12개월, 36개월, 60개월)가 도래하는 날에 대해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직전 영업일 현재 가장 최근의 기간별 금융채(AAA) 유통수익률을 적용합니다. 단,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 중 KIS채권평가, 한국자산평가, 나이스피앤아이가 고시하는 유통수익률의 단순평균으로 하며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절사합니다.<br>2. **COFIX**는 대출개시일과 매 금리변동주기가 도래하는 날 직전 영업일에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가장 최근의 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잔액기준 | - 문언정비<br>- 문언정비<br>- 적용기준 변경<br>- 소수점4자리 절사기준 추가<br>(당행 15.6월부터 기시행)<br>-단기COFIX 삭제(미사용) |

| | | |
|---|---|---|
| COFIX를 적용합니다. | COFIX를 적용합니다. | |
| 4. KORIBOR(코리보)는 대출실행일과 매 금리변동주기가 도래하는 날에 연합인포맥스에서 고시하는 직전 영업일(금리변동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전 영업일)의 기간별 KORIBOR를 적용합니다. | **(삭 제)** | -코리보 삭제 |
| 5. **CD유통수익률**은 대출실행일과 매 금리변동 주기가 도래하는 날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직전 영업일(금리변동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전영업일)의 CD91일물 유통수익률을 적용합니다. | 3. **CD유통수익률**은 대출개시일과 매 금리변동 주기가 도래하는 날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직전 영업일의 CD91일물 유통수익률을 적용합니다. | - 적용기준 변경 |
| **(신 설)** | 4. **국고채권 유통수익률**은 대출개시일의 직전 영업일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KIS채권평가, 한국자산평가, 나이스피앤아이 유통수익률의 단순평균으로 하며,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적용합니다. | - 국고채권 유통수익률 추가 |
| **(신 설)** | 5. **u-보금자리론(기본형) 10년만기 대출금리**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시하는 매 금리변동 주기가 도래하는 달의 u-보금자리론 기본형 10년만기 대출금리를 적용합니다 | - u보금자리론 기준금리 추가 |
| | 6. **원화대출고정금리**는 자본시장에서 유통되는 시장 상품중 금리만기일과 일치하는 대표적 상품의 시장 유통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적용합니다.<br>가. 금리만기별 기준상품 유통수익률 등 : CALL금리, CD유통수익률, 금융채(AAA)유통수익률, 국고채수익률<br>나. 산출방법 : 여신실행일의 직전 영업일 공신력 있는 기관(한국은행, 한국금융투자협회 등)이 고시하는 금리 만기별 기준상품 유통수익률 등을 적용하며, 유통수익률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적용합니다.<br>※ 보간법 : 기준상품의 시장유통수익률이 없는 만기구간은 유통수익률이 있는 상하만기 수익률에 가중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법 | - 변경전 제2조 ②항 1호에서 이동 |
| **(신 설)** | ③ **고정금리와 변동금리 혼합형** 여신의 경우, 제1조에서 정한 고정금리 적용기간 중 최초 약정한 고정금리가 적용되며, 이후 고정금리 적용이 완료되어 변동금리 적용시에는 고객과 별도의 약정 없이 제 1조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은행에서 자동으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. | - 혼합형 금리 설명 추가 |
| ③ 기타 예·적금 담보대출 등은 예·적금 금리 연동 또는 원화대출 고정금리 준용(±α)등 | ④ 예·적·부금 담보대출 등은 담보로 제공된 예·적·부금 등의 수신금리 연동 또는 | - 문언정비 |

| | | |
|---|---|---|
| 은행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이자율을 적용합니다. | 고정금리 등 은행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이자율을 적용합니다. | |
| ④ 제1조의 대출기간 자동연장에 따라 기간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시점에서 은행이 정한 기준금리 + 가산금리로 변경할 수 있기로 하며, 은행은 연장된 대출금의 이자율과 새로운 상환기일 등을 연장 후 1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. | | - 변경후 제8조로 이동 (일부 문언정비) |
| ⑤ 채무자는 제4항에 의하여 통지된 이자율 등 변경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 이자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전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기로 합니다. 또한,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. | | |
| (p.2) | (p.2) | |
| **제3조 지연배상금** | **제3조 지연배상금** | |
| ① 이자·분할상환원(리)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,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 | ① 이자·분할상환원(리)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 | |
| ②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, 그때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,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 | ②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 | |
| (p.2) | | |
| **제4조 가계통장회전대출 지연배상금 및 사용제한** | | |
| ① 이자원가는 한도금액 이내에서만 가능하고, 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가 일부라도 원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담하며,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(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)간 지체한 때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,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정해진 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곧 지급하기로 합니다. | ③ 한도대출(통장대출)의 경우,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원가는 한도금액 이내에서만 가능하고, 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가 일부라도 원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 이 경우 통장대출 실행지정계좌에 부족금액을 곧 입금하기로 하며, 입금된 자금은 이자 및 지연배상금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합니다. | - 문언정비 (변경전 제4조 제①항 및 제②항을 정비하여 변경후 제3조 제③항으로 운용) |
| ② 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가 일부라도 원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장회전대출 | | |

| | | |
|---|---|---|
| 실행지정계좌에 부족금액을 곧 입금하기로 하며, 동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이자 및 지연배상금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| | |
| ③ 은행은 채무자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정보, 부도정보, 관련인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 정보로 등록되거나 본 대출 이외의 다른 대출금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대출(한도)금액에 불구하고 별도의 통지없이 회전대출금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| **(삭 제)** | - 회전대 한도사용제한을 통지항목으로 운영할 예정이므로 삭제 |
| **(p.2)** | **(p.2)** | |
| **제5조 중도상환수수료** | **제4조 중도상환수수료** | |
| ① 본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초 약정한 대출기일(기한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, 이하 같음) 이전에 상환(이하 "중도상환"이라 한다)하는 때에는 제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기로 합니다. | ① 본인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초 약정한 대출기일(기한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. 이하 같음) 이전에 상환(이하 "중도상환" 이라 한다)하는 때에는 제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기로 합니다. | |
| ② 대출잔여일수 등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. | ② 대출잔여일수 등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. | |
| 1. '대출잔여일수'는 상환방법에 관계없이 대출실행일로부터 약정기일 전일까지의 일수(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을 적용)에서 중도상환일까지의 대출경과 일수(대출실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일수)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. | 1. '대출잔여일수'는 상환방법에 관계없이 대출기간에서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. | - 문언정비 |
| 2. '대출기간'은 대출실행방법에 관계없이 대출실행일로부터 약정기일 전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되,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을 적용합니다. | 2. '대출기간'은 대출실행방법에 관계없이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되,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(일수)을 적용합니다. | |
| ③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(기한연장 포함)까지 적용합니다. | ③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개시일로부터 3년(기한연장 포함)까지 적용합니다. | |
| ④ 분할상환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상환 대출금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하며, 일부 중도상환인 경우에는 먼저 기일도래하는 분할 상환금부터 상환하는 것으로 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합니다. | ④ 분할상환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상환 대출금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하며, 일부 중도 상환인 경우에는 먼저 기일도래하는 분할 상환금부터 상환 하는 것으로 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합니다. | |
|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지급을 면제하기로 합니다. |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합니다. | |
| 1. 기한의 이익 상실, 상계 등으로 은행이 대출금을 기한전에 회수하는 경우 | 1.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, 상계 등의 사유로 은행이 대출금을 기한 전에 회수하는 경우 | -면제조건 일부 추가,변경 및 문언정비 |
| 2..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계약인수로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 | | |
| 3. 잔여대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| 2. 잔여대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| |
| 4. 기타 은행이 정하는 경우 | 3. 채무자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| |

| | | |
|---|---|---|
| | 4. 은행이 정하는 고정금리 인정기준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| |
| | 5. 기타 은행이 정하는 경우 | |
|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출 상품별 추가약정에 의해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. |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출 상품별 추가약정에 의해 별도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. | |
| (p.2) | (p.2) | |
| **제7조 담보 · 보험** | **제5조 담보 · 보험** | |
| 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,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대출로 매입 또는 건축한 해당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,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. | 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,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대출로 매입 또는 건축한 해당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,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. | |
| (p.2) | (p.2) | |
| **제8조 인지세의 부담** | **제6조 인지세의 부담** | |
|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%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. |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%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. | |
|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(가계용)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. |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(가계용)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. | |
| (p.2) | (p.2) | |
| **제9조 자료의 제출 등** | **제7조 자료의 제출 등** | |
| ① 본인은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18조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자료를 곧 제출하기로 합니다. | ① 본인은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18조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자료를 곧 제출하기로 합니다. | |
| ② 본인은 은행이 따로 정한 부채현황표를 제출함에 있어 본인의 부채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, 은행이 별도로 조회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자료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. 다만, 신용정보자료에 부채현황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신용정보자료 여백에 포함시켜 제출하기로 합니다. | ② 본인은 은행이 따로 정한 부채현황표를 제출함에 있어 본인의 부채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, 은행이 별도로 조회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자료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. 다만, 신용정보자료에 부채현황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신용정보자료 여백에 포함시켜 제출하기로 합니다. | |
|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제출자료가 허위, 위·변조, 불성실 작성 또는 고의적인 부실자료로 확인된 경우에는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7조에 따른 기한전 채무 변제의무의 부담과 아울러 "신용정보관리규약"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로 |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제출자료가 허위, 위·변조, 불성실 작성 또는 고의적인 부실자료로 확인된 경우에는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7조에 따른 기한전 채무 변제의무의 부담과 아울러 "신용정보관리규약"에 의한 | |

| | | |
|---|---|---|
| 등록됨을 확인합니다. | 신용도판단정보로 등록됨을 확인합니다. | |
| | (p.2)<br>**제8조 대출기간 자동(무자서)연장**<br>① 제1조의 대출기간 자동연장에 따라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신용등급의 변경, 은행과 계약한 거래조건의 변동 등에 따라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.<br>② 변경된 이자율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 전 이자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기로 합니다. 또한,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.<br>③ 유선을 통한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점에 방문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 후 연장하기로 합니다.<br>④ 다음의 경우에는 자동연장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<br>1. 대출기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<br>2.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관리 대상정보 등에 등록된 경우<br>3. 기타 외부감독규정 및 은행의 내규 등에 따른 자동연장조건이 안될 경우 | - 변경전 제2조 제④항 및 제⑤항에서 이동 (항목구체화 및 문언정비) |
| (p.2)<br>**제6조 담보권 설정**<br>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 앞으로 그 증서(통장)의 인도를 마쳤습니다.<br>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·수익권(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)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·수익의 수익권, 특별장려금,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.<br>③ 예금 등이 기간연장·개서·갱신 ·분할·병합·증액 ·감액 또는 이자 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(근)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,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 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 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| (p.2)<br>**제9조 담보권 설정**<br>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 앞으로 그 증서(통장)의 인도를 마칩니다.<br>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·수익권(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)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·수익의 수익권, 특별장려금,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.<br>③ 예금 등이 기간연장·개서·갱신·분할·병합·증액·감액 또는 이자 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(근)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,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 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 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| |

| | | |
|---|---|---|
|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.<br>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,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. |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.<br>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(근)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,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. | - 문언정비 |
| **•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**<br>(표 기재 생략) | **• (근)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** (단위 : 원)<br>**※ 채무자 명의가 아닌 예금 등을 질권설정 할 경우에는 별도의 질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** | - 문언정비 |
| **(p.2)**<br>**제10조 기타 특약사항** | **(p.2)**<br>**제10조 기타 특약사항** | |
| **(p.1)**<br>**제1조 거래조건**<br>**원금 · 원리금 및 이자 자동이체 지정 결제 계좌**<br>**무인감 • 무통장 출금 동의 :**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등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할 | **(p.2)**<br>**제11조 대출금 입금 계좌 지정 및 자동이체 신청**<br>**(1) 무인감 • 무통장 출금동의**<br>• **원(리)금 수수료 지급동의** :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등에 의하여 본인이 | - 문언정비 |

| 종 별 | | |
|---|---|---|
| 증서번호 또는 계좌번호 | | |
| 명의인(또는위탁자) | | |
| 수익자 | | |
| 계약액 ( 년 월 일 까지 입금누계) | | |
| 담보한도액(설정금액) | | |
| 증 서 일 자 | | |
| 지 급 기 일 | | |
| 인감대조 확인필 | 담당자 | 복수 확인자 |
| | | |

| | | |
|---|---|---|
| 원금, 원리금, 이자, 대출관련 수수료 등과 제비용(근저당권 설정비, 수입인지대, 화재보험료 등)에 대하여 대출금 입금(실행)계좌에서 출금처리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.<br><br>**(신 설)** | 부담할 원금, 원리금, 이자, 대출관련 수수료에 대하여 자동이체 결제계좌에서 별도의 청구서 작성 없이 출금 처리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.<br>• **비용의 납부 동의** : 다음의 비용에 대하여 대출금 입금(실행)계좌에서 별도의 지급청구서 작성 없이 출금 처리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.<br>☐ 수입인지대 ☐ 보험료 ☐ 보증료 ☐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<br>☐ 기타비용( )<br><br>**(2) 예금담보대출 상계 후 잔액 반환 계좌번호**<br>☐ 대출금 입금계좌와 동일 ☐ 자동이제 결제계좌와 동일<br>☐ 잔액 반환계좌번호 별도 지정(은행명: 계좌번호:<br>예금주: )<br>*담보제공자와 반환계좌의 예금주는 동일하여야 함. | - 상계후 잔액 반환 계좌번호 지정항목 신설 |

# 대출거래 추가약정서(가계용) 개정(안)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(안) | 비 고 |
|---|---|---|
| **대출거래 추가약정서(가계용)**<br>(한도변경/금리변경/약정기한연장/기타조건변경용)<br>**(p.2)**<br>1.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및 가계대출 상품설명서, 본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,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<br>2.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, 대출이자율 인상 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<br>_____년___월___일자 (  )약정에 추가하여 다음같이 확약합니다.<br><br>**차주, 연대보증인, 담보제공자의 정보 기재 항목**<br>주소 정보 기재<br><br>**제1조 거래조건**<br>**가. 대출한도**<br>• 변경전: 금 원<br>• 변경후: 금 원<br><br>**나. 약정기한**<br>• 변경전: 20 년 월 일 | **대출거래 추가약정서(가계용)**<br>(기한연장, 한도변경, 조건변경)<br>**(p.1)**<br>1. 본인은 한국외환은행과 약정한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담보제공자(연대보증인)과 함께 신청하며, 기 약정 내용에 추가하여 확약합니다.<br>2.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,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, 이해하였습니다.<br>3. 변동금리대출은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, 대출이자율 인상 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<br>4. 담보제공자(연대보증인)은 차주의 부채현황, 연체유무 및 신용관리대상정보 등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<br><br>**차주, 연대보증인, 담보제공자의 정보 기재 항목**<br>주소(자택, 직장 정보), 전화번호(직장, 자택, 휴대폰), 우편물수령처 선택, E-mail, 부채현황표(차주)<br><br>**제1조 대출 조건변경 내용**<br>**1. 대출계좌번호 (  )**<br>**2. 최초 약정일**<br>20 년 월 일<br>**3. 직전취급일**<br>20 년 월 일<br>**4. 약정기일**<br>• 현재 조건: 20 년 월 일 | - 문언정비 및 변경전 제2조 하단의 고객확인 사항 이동<br><br>- 내용 구체화<br><br>- 조건변경 기재항목 세분화 및 문언정비 (제1조 이하 동일) |

| | | |
|---|---|---|
| • 변경후: 20 년 월 일 | • 변경 후 조건: 20 년 월 일 | |
| | **5. 대출한도** | |
| | • 현재 조건: 금 원정(₩ ) | |
| | • 변경 후 조건: 금 원정(₩ ) | |
| | **6. 기타 조건변경** | |
| | • 현재 조건: | |
| | • 변경 후 조건: | |
| **다. 적용금리(금리변동주기 ( )개월)** | **7. 변경 후 대출이자율(연이율)** | |
| **(변경전)** | | |
| **□고정금리** | **□고정금리** | |
| | **대출기간만료일까지** | |
| □ 연 % | □ 연 % | |
| □ ( ) + ( )% | □ 원화대출고정금리 + ( )% | |
| **□변동금리** | □ ( ) 물 국고채권 유통수익률 + ( )% | |
| □( ) + % | □ 기타( ) + ( )% | |
| **(변경후)** | | |
| **□고정금리** | **□변동금리** | - 기준금리 구체화 |
| □ 연 % | □( )물 금융채(AAA) 유통수익률 + ( )% | |
| □ ( ) + ( )% | □신규취급액기준 COFIX + ( )% | |
| **□변동금리** | □잔액기준 COFIX + ( )% | |
| □( ) + % | □91일물 CD유통수익률 + ( )% | |
| ※ 기준금리 종류(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기준금리를 '다. 적용금리' ( ) 내에 기재합니다.) | □수신금리 + ( )% | |
| | □기타( ) + ( )% | |
| ■시장금리연동기준금리 ■일반원화기준금리 ■금융채(AAA)연동 기준금리 | | |
| ■CD금리연동기준금리 ■(신규취급액기준)COFIX연동기준금리 | | |
| ■(잔액기준)COFIX연동기준금리 ■원화대출고정금리 ■금융채(AAA)유통수익률 ■ 단기 COFIX ■신규취급액기준 COFIX ■잔액기준COFIX ■KORIBOR ■CD유통수익률 | **□혼합금리** | |
| | 1. 고정금리 | |

| | | |
|---|---|---|
| **라. 연장 약정서 징구 생략, 대출 이자율의 적용특약**<br>1. 대출기간 만료 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기간 연장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, 은행은 “대출기간연장 및 금리변경”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은행이 정하는 단위로 상환기일의 연장 및 금리변경 처리하기로 하며, 은행은 연장된 대출금의 이자율과 새로운 상환기일 등을 연장 후 10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.<br>2. 채무자는 통지된 이자율 등 변경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1개우러 이내에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 전 이자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의 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전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하기로 합니다.<br><br>**마. 기타조건변경( )**<br><br>**제2조 대출기준금리의 적용**<br>① 제1조에서 시장금리연동기준금리, 일반원화기준금리, CD금리연동기준금리, COFIX연동기준금리, 금융채(AAA)연동기준금리의 ‘기준금리’는 자금조달원가, 업무원가, 신용원가, 세금, 주택신보 출연료 등으로 구성되며, 각 ‘기준금리’별 자금조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를 적용하되, 대출기간에 따른 실질조달금리 및 시장상황 등을 반영한 유동성프리미엄과 정책적 스프레드(가산금리) 등의 자금원가 요소가 가산됩니다.<br>1. 시장금리연동기준금리와 일반원화기준금리의 시장금리는 대출실행일과 매 금리변동주기가 도래하는 날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직전 영업일(금리변동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전 영업일)의 기간별 국고채유통수익률을 | 대출개시일로부터 ( )년 ( )개월간<br>□ 고정금리 _____%<br>□ 원화대출고정금리 + ( )%<br>□( )물 금융채(AAA) 유통수익률 + ( )%<br>□기타( ) + ( )%<br>2. 변동금리 적용(고정금리 적용기간 만료 이후)<br>□신규취급액기준 COFIX + ( )%<br>□잔액기준 COFIX + ( )%<br>□ u-보금자리론 고정금리(기본형) 10년만기 대출금리 + 가산금리( )% 또는 차감금리 ( )%<br>□기타( ) + ( )%<br><br>**금리변동주기: 매( )개월**<br><br>**제2조 (근)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**<br>(표 기재 생략)<br><br>**제3조 대출이자율의 변동**<br>**(삭 제)** | - 구금리(RBP)체계 운용기준 삭제<br>(약정서를 작성하여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금리체계로 변경하여 운영 예정) |

| | | |
|---|---|---|
| 적용합니다.<br>2. 금융채(AAA)연동기준금리의 시장금리는 대출실행일과 매 금리변동주기가 도래하는 날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직전 영업일(금리변동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전 영업일)의 기간별 금융채(AAA)유통수익률을 적용합니다.<br>3. CD금리연동기준금리의 시장금리는 대출실행일과 매 금리변동주기가 도래하는 날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직전영업일(금리변동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전 영업일)의 91일물 CD유통수익률을 적용합니다.<br>4. COFIX연동기준금리의 시장금리는 대출실해잉로가 매 금리변동주기가 도래하는 날 직전 영업일에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된 신규취급액 또는 잔액기준 COFIX를 적용합니다.<br><br>② 제1조에서 원화대출고정금리, 금융채(AAA)유통수익률, 단기COFIX 신규취급액기준 COFIX, 잔액기준 COFIX, KORIBOR, CD유통수익률의 '기준금리'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를 적용합니다.<br><br>1. **원화대출고정금리**는 자본시장에서 유통되는 시장 상품 중 금리만기일과 일치하는 대표적 상품의 시장 유통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적용합니다.<br>가. 금리만기별 기준상품 유통수익률 등 : CALL금리, 금융채(AAA)유통수익률, 국고채수익률<br>나. 산출방법 : 여신실행일의 직전 영업일 공신력 있는 기관(한국은행, 한국금융투자협회 등)이 고시하는 금리 만기별 기준상품 유통수익률 등을 적용하며, 유통수익률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간법에 의하 여 산출하여 적용합니다.<br>※ 보간법 : 기준상품의 시장유통수익률이 없는 만 기구간은 유통수익률이 있는 상하만기 수익률에 가중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법 | ① 제1조에서 선택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에 의한 대출이자율은 대출개시일(분할취급대출은 건별로 매 대출실행일) 현재의 「기준금리 + 가산금리」에 의해 결정되며, 변동금리에 의한 대출이자율은 매 금리변동주기가 도래하는 날에 변경하여 적용됩니다.<br>② 제1조에서 선택한 각 '기준금리'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됩니다. | - 문언정비<br><br>- 기준금리 운용기준은 대출거래약정서(가계용)와 동일 |

| | | |
|---|---|---|
| 2. **금융채(AAA)유통수익률**은 대출실행일과 매 금리변동 주기가 도래하는 날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직전 영업일(금리변동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전영업일)의 기간별(신탁대출의 경우 1년물) 금융채(AAA) 유통수익률을 적용합니다. | 1. **금융채(AAA)유통수익률(3개월물, 6개월물, 1년물, 3년물, 5년물)**은 대출개시일과 매 금리변동 주기(3개월, 6개월, 12개월, 36개월, 60개월)가 도래하는 날에 대해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직전 영업일 현재 가장 최근의 기간별 금융채(AAA) 유통수익률을 적용합니다. 단,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 중 KIS채권평가, 한국자산평가, 나이스피앤아이가 고시하는 유통수익률의 단순평균으로 하며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절사합니다. | - 적용기준 변경<br>- 소수점4자리 절사기준 추가 (당행 15.6월부터 기시행) |
| 3. **COFIX**는 대출실행일과 매 금리변동주기가 도래하는 날 직전 영업일에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된 단기 COFIX, 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잔액기준 COFIX를 적용합니다. | 2. **COFIX**는 대출개시일과 매 금리변동주기가 도래하는 날 직전 영업일에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가장 최근의 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잔액기준 COFIX를 적용합니다. | -단기COFIX 삭제(미사용) |
| 4. **KORIBOR**는 대출실행일과 매 금리변동주기가 도래하는 날에 연합인포맥스에서 고시하는 직전 영업일(금리변동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전 영업일)의 기간별 KORIBOR를 적용합니다. | (삭 제) | -코리보 삭제 |
| 5. **CD유통수익률**은 대출실행일과 매 금리변동 주기가 도래하는 날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직전 영업일(금리변동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전영업일)의 CD91일물 유통수익률을 적용합니다. | 3. **CD유통수익률**은 대출개시일과 매 금리변동 주기가 도래하는 날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직전 영업일의 CD91일물 유통수익률을 적용합니다. | - 적용기준 변경 |
| **(신 설)** | 4. **국고채권 유통수익률**은 대출개시일의 직전 영업일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KIS채권평가, 한국자산평가, 나이스피앤아이 유통수익률의 단순평균으로 하며,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적용합니다. | - 국고채권 유통수익률 추가 |
| **(신 설)** | 5. **u-보금자리론(기본형) 10년만기 대출금리**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시하는 매 금리변동 주기가 도래하는 달의 u-보금자리론 기본형 10년만기 대출금리를 적용합니다. | - u보금자리론 기준금리 추가 |
| | 6. **원화대출고정금리**는 자본시장에서 유통되는 시장 상품중 금리만기일과 일치하는 대표적 상품의 시장 유통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적용합니다.<br>가. 금리만기별 기준상품 유통수익률 등 : CALL금리, CD유통수익률, 금융채(AAA)유통수익률, 국고채수익률 | |

| | | |
|---|---|---|
| | 나. 산출방법 : 여신실행일의 직전 영업일 공신력 있는 기관(한국은행, 한국금융투자협회 등)이 고시하는 금리 만기별 기준상품 유통수익률 등을 적용하며, 유통수익률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적용합니다. | |
| **(신 설)** | ※ 보간법 : 기준상품의 시장유통수익률이 없는 만기구간은 유통수익률이 있는 상하만기 수익률에 가중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법 | - 혼합형 금리 설명 추가 |
| | ③ **고정금리와 변동금리 혼합형** 여신의 경우, 제1조에서 정한 고정금리 적용기간 중 최초 약정한 고정금리가 적용되며, 이후 고정금리 적용이 완료되어 변동금리 적용시에는 고객과 별도의 약정 없이 제 1조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은행에서 자동으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. | |
| ③ 기타 예·적금 담보대출 등은 예·적금 금리 연동 또는 원화대출 고정금리 준용(±α)등 은행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이자율을 적용합니다. | | - 문언정비 |
| | ④ 예·적·부금 담보대출 등은 담보로 제공된 예·적·부금 등의 수신금리 연동 또는 고정금리 등 은행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이자율을 적용합니다. | |
| **(신 설)** | | - 인지세 부담 항목 추가 (대출거래 약정서와 동일) |
| | **제4조 인지세의 부담** | |
| |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%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. | |
| |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(가계용)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. | |
| **(신 설)** | | - 자료제출 항목 추가 (대출거래 약정서와 동일) |
| | **제5조 자료의 제출 등** | |
| | ① 본인은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18조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자료를 곧 제출하기로 합니다. | |
| | ② 본인은 은행이 따로 정한 부채현황표를 제출함에 있어 본인의 부채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, 은행이 별도로 조회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자료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. 다만, 신용정보자료에 부채현황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신용정보자료 여백에 포함시켜 제출하기로 합니다. | |
| |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제출자료가 허위, 위·변조, 불성실 작성 또는 고의적인 부실자료로 확인된 경우에는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7조에 따른 기한 전 채무 변제의무의 부당과 아울러 "신용정보관리규약"에 의한 | |
| **제1조 거래조건** | | |

| | | |
|---|---|---|
| **라. 연장 약정서 징구 생략, 대출 이자율의 적용특약**<br><br>1. 대출기간 만료 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기간 연장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, 은행은 “대출기간연장 및 금리변경”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은행이 정하는 단위로 상환기일의 연장 및 금리변경 처리하기로 하며, 은행은 연장된 대출금의 이자율과 새로운 상환기일 등을 연장 후 1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.<br><br>2. 채무자는 통지된 이자율 등 변경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 전 이자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의 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전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하기로 합니다.<br><br>**(신 설)** | 신용도판단정보로 등록됨을 확인합니다.<br><br>**제6조 대출기간 자동(무자서)연장**<br>①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기간 연장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을 득하는 경우, 은행은 대출기간 연장 및 금리변경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상환기일 연장 및 금리변경 처리하기로 하며, 은행은 연장된 대출금의 이자율과 새로운 상환기일 등을 연장 후 15일 이내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.<br>② 제1조의 대출기간 자동연장에 따라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신용등급의 변경, 은행과 계약한 거래조건의 변동 등에 따라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.<br>③ 변경된 이자율 등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 전 이자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기로 합니다. 또한,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.<br>④ 유선을 통한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점에 방문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 후 연장하기로 합니다.<br>⑤ 다음의 경우에는 자동연장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<br>1. 대출기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<br>2.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관리 대상정보 등에 등록된 경우<br>3. 기타 외부감독규정 및 은행의 내규 등에 따른 자동연장조건이 안될 경우<br><br>**제7조 담보권 설정**<br>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2조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 앞으로 그 증서(통장)의 인도를 마칩니다. | - 항목구체화 및 문언정비<br>(대출거래약정서와 동일)<br><br>- 담보권설정 항목 추가<br>(대출거래 약정서와 동일) |

| | | |
|---|---|---|
| |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·수익권(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)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・수익의 수익권, 특별장려금,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.<br>③ 예금 등이 기간연장・개서・갱신・분할・병합・증액・감액 또는 이자 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(근)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,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 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.<br>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(근)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. | |